소관부서 : 감사법무담당관

제정 2022 · 9 · 30 조례 제1857호

제1조(「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의 개정)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제104조제2항"을 "「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이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 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를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3조(「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천시 도로점용 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지방자치법」제14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지방자치법」제157조제 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4조(「이천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천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지방자치법」제122조"를"「지방자치법」제137조"로 한다.

제5조(「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개정)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의 개정)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04조"를 "「지방자치법」제117조"로 한다.

제7조(「이천시 생활임금 조례」의 개정) 「이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으로 한다.

제8조(「이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의 개정) 「이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지방자치법」제127조제1항"을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이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이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지방자치법」제14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지방자치법」제15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비고란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이천시 수도급수 조례」의 개정)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이천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천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를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12조(「이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4조"를 "「지방자치법」제5조"로 한다.

제13조(「이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천시 의안의 비용추계

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66조의3"을 "「지방자치법」제78조"로 한다.

제14조(「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를 "「지방자치법」제42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지방자치법」제34조"를"「지방자치법」제42조"로 한다.

제15조(「이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 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0조 중 "「지방자치법」제35조"를 "「지방자치법」제43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제43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으로 한다.

제16조(「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33조"를 "「지방자치법」제40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2호"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7조(「이천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천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지방자치법」제4조의2"를"「지방자치법」제7조"로 한다.

제18조(「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

례」의 개정)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지방자치법」제126조"를"「지방자치법」제141조"로 한다.

제19조(「이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의 개정) 「이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지방자치법」제104조"를"「지방자치법」제117조"로 한다.

제20조(「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7조 및 제139조"를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 조"로 한다.

제22조(「이천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천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을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으로 한다.

제23조(「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제24조(「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개정)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39조"를 "「지방자치법」제47조"로 한다.

제25조(「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의 개정) 「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6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제137조"를 "「지방자치법」제154조"로 한다.

제26조(「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이천시 청소년수련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방자치법」제104조제2항"을 "「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 중 "「지방자치법」제140조"를 "「지방자치법」제157조"로 한다.

제27조(「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이천시 통합재 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지방자치법」제142조"를"「지방자치법」제159조"로 한다.

제29조(「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지방자치법」제140조"를"「지방자치법」제157조"로 한다.

제30조(「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6조, 제112조부터 제120조"를 "「지방자치법」제9조, 제125조부터 제134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를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114조"를 "법 제127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4조의2제1항·제4항"을 "제7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제31조(「이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의 개정) 「이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지방자치법」제12조"를"「지방자치법」제16조"로 한다.

- 제32조(「이천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의 개정) 「이천시의회의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지방자치법」제38조제2항"을"「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으로 한다.
- 제33조(「이천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천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6조"를 "「지방자치법」제9조"로 한다.
- 제34조(「이천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이천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제104조제2항"을 "「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으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